서 면 답 변 서

질의위원	신교선 위원	소 속	평창군의회
답 변 자	평창군수(재무과장)	일 자	질의 : 1999년 12월 13일 답변 : 1999년 12월 13일
회 의	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결특위		

□ 질의요지

o 도유지 폐천부지 매각에 대한 내역?

□ 답변요지

o 속사리 1052-39, 40번지 2필지(4,222㎡)에 대하여
속사리 거주 박세균과 금59,108,000원에 '98. 10월 매매계약 체결하였으나,
'98년도부터 2001년까지 4회에 걸쳐 분할 납부토록하여
'99년분 금16,698,010원을 부과 하였으며

o 봉평면 덕거리 952-22, 23, 24번지 3필지(1,588㎡)에 대하여
금8,724,800원에 '98. 7월 일시불로 매매계약 체결 하였음
따라서 위 5필지에 대한 매각대금 25,400,000원중 군유분(30%)인
약 7,000,000원을 세입편성하였음